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9. 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8월 19일
- 나. 발 의 자: 김화영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2021. 8. 3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화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3. 1. 1. 「토지수용법」(2002. 2. 4. 폐지)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고,
-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 제41조에 따른 물건의 제거·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에 규정되어 있음.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이 폐지 또는 제·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제 379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김화영 의원 외 4명

##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제·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 법령명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6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 8. 10. ~ 8. 17.):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1981년12월31일”을 각각 “198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각호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

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를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철거시”를 “철거 시”로, “아니할”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 단서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u>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토지이용법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u>각호 1과</u> 같다.</p> <p>1. <u>1981년12월31일</u>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p> <p>2. (생략)</p> |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u> -----</p> <p>제3조(적용범위) -----<br/>-----<br/>---- <u>각 호의 어느 하나와</u> ----<br/>-----.</p> <p>1. <u>1981년 12월 31일</u> -----<br/>-----</p> <p>2. (현행과 같음)</p> |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준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생략)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

3. ----- 19  
81년 12월 31일 -----

4. -----  
-----  
주거용 건물-----  
-----  
-----  
-----  
-----

제4조(적용배제) --- 각 호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않는다.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

2. -----  
----- 주거용 건축물-----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대상자) ----- 해당



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  
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관한법  
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  
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않고 -----  
철거 시-----  
-- 않는 -----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  
한다. -----  
-- 「지방세법」에 따른 -----  
-----.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  
---